

영등포구의회
제12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3. 26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3. 19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·같은법 시행령 제정·시행 (2006.1.1)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 (안 제5조)
-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8조의 제목 “(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)” 를 “(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)” 로 하고, 동조 제1항중 “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” 를 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로 함 (안 제8조)
-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 (안 제12조)

관련법규

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: 2006.1.1 제정·시행
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』 : 2006.1.1 제정·시행
-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』 : 2006.6.26 개 정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준비중에 있음.

검토의견

- 2006.1.1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,
- **안 제5조 제3항에는**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,
- **안 제6조 제4항에는**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**안 제7조에는** 종전 결산보고로 사업종결을 갈음하던 것을 성과 분석보고까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·중요성을 증대시키며,
- **안 제8조에는**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

- **안 제12조에는**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한 것 등 동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그러나 안 제8조제3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“부구청장” 에서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 으로, 같은항 제2호 위촉 위원중 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” 을 “1명” 으로 개정하고자 하나, 기금운용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감안 “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” 를 “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” 로, 위촉 위원중 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” 을 “2명” 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로 2007년 우리구 체육진흥기금 운영규모는 49억1천6백만원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3. 26.

보고자 : 이 남 식